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50014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유태훈, 조세형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형, 심승현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569,540원 및 그 중 105,105,810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1. 3. 19.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2.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20. 6. 4.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2. 1. 27.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299,000,000원의 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B, 피고 C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6. 18.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6. 21.자 무역어음대출금 129,000,000원의 상환기한을 연장해주었다.

다. 피고 회사가 2020. 7.경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8. 27. 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의 채무원리금 합계 105,105,810원(=원금 103,680,000원+이자 1,425,8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당시 약정연체이율은 연 10%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인 대지급금은 1,463,73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등

106,569,540원(=105,105,810원+1,425,810원) 및 그 중 105,105,810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3. 19.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와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가) 피고 C는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2020. 5. 6.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 5. 6. 접수 제46242호로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는 2020. 6. 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2020. 6. 5.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 6. 5. 접수 제5734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

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G의 신청으로 2021. 1. 18. 의정부지방법원 E로, 근저당권자 H조합의 신청으로 2021. 2. 2. 의정부지방법원 F(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은 2021. 11. 24. 주식회사 I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는 같은 날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 2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위 배당표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 D 등에 대한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실제 배당할 금액	2,378,030,654원		
채권자	J 주식회사	G	K
채권금액(계)	1,180,676,701원	250,000,000원	300,000,000원
배당순위	1	2	3
이유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변경 전 : H조합 16. 10. 21)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19. 4. 1.)	근저당권자 (19. 5. 20.)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	250,000,000원	300,000,000원
배당액	1,180,676,701원	250,000,000원	300,000,000원
배당 비율	100%	100%	100%
채권자	피고 D	포천세무서	한국전력공사
채권금액(계)	299,000,000원	8,547,180원	127,677,690원
배당순위	4	5	6

이유	근저당권자 (20. 5. 6.)	교부권자 (비당해세, 20. 5. 31.)	가압류권자 (의정부지법 20카단201940)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0원	127,677,690원
배당액	299,000,000원	8,547,180원	14,693,931원
배당 비율	100%	100%	11.51%
채권자	L주식회사	원고	M 유한회사
채권금액(계)	35,285,370원	1,271,242,639원	952,572,498원
배당순위	6	6	6
이유	가압류권자 (서울중앙지법 20카단811960, 서울중앙지법 20가단35920)	배당요구권자 (대구지법 20카단36197, 대구지법 20차전21818)	가압류권자 (대구지법 20카단36480)
채권최고액	31,295,800원	0원	840,000,000원
배당액	3,601,712원	146,302,393원	96,672,347원
배당 비율	11.51%	11.51%	11.51%

3)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D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2. 1. 3.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1카합5604)을 받아 피고 D에 대한 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내지 15호증, 을라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출급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가)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D는 2019. 12. 30. 피고 회사에 2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 4. 29.로 정하여 대여해주었고,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라는 피고 C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시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2020. 5. 6.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대여일인 2019. 12.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일인 2020. 5. 6.과 2020. 6. 4.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8. 27.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5. 6.과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20. 6. 4.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2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 C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D는 그 원상회복으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2. 1. 27.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299,000,000원의 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목 록

1. 경기도 의정부시 대 1169㎡

2. 경기도 의정부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81.37㎡

1층 111.43㎡

3. 경기도 의정부시 임야 83㎡

4. 경기도 의정부시 임야 778㎡. 끝.

